

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관련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 (참고#1)

- **채용인원이 6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30% 채용목표제 적용**
 - 대상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¹⁾ 졸업(예정)자²⁾

- **우대내용** :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30%) 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단,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는 제외)
ex)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가점) 80점일 경우
☞ 채용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 **추가합격자 선정기준**
 -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50%)+직무수행능력(50%)+가점 합산 고득점순
 - (면접전형)직업기초면접(50%)+직무PT면접(50%)+가점 합산 고득점순
 - *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본사이전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구 또는 경북지역 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입사지원시 반드시 입력(체크)하여야 하며, 미입력 시 우대불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단, 사이버대학은 제외)

2) 접수마감일(2023.8.10.)기준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하고, 면접전형당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뜻함.

본사이전 지역인재 우대 관련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0. 24., 2019. 11. 26.>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1. 26.>

③ (이하 생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1.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③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 1. 23., 2018. 2. 27., 2020. 5. 12., 2022. 1. 25.>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4.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5.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 23., 2020. 5. 12.>